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391 |
|----------|-----|

2024. 9. 5.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2024. 8. 23. 강남구청장(교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32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9. 5.)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강남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 다양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목적 (안 제1조)
- 나. 장학기금의 설치·조성·관리규정 (안 제2조~제4조)
- 다.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안 제5조~제10조)
- 라.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추천·선발·지급 (안 제11조~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9. ~ 2024. 8. 8.) 결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자 변경(위원장→구청장)
- 장학생 자격·선발 방법 수정

| 입법예고 조례(안) | 반영결과 |
|---|--|
|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3. <u>장학기금 출연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⑥ <u>위원장은</u>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④ ----- ----- ----- -----</p> <p>3. <u>장학사업</u>----- -----</p> <p>⑥ <u>구청장</u>----- ----- ----- -----</p> |
| <p>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u>학생으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p> | <p>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 ----- ----- ----- -----<u>사람으로서</u>----- -----</p> |

| | |
|--|--|
| 어야 한다. | -----. |
|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제13조(장학생의 선발) ----- ----- -----. |
| 2. 일반 장학생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거주지 동장 또는 부서장이 <u>관련 사회단체</u> 장과 <u>협의하여</u> <u>구청장</u> 에게 추천 | 2. ----- ----- <u>구청장</u> ----- --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안건은 장학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임.

나. 검토내용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의미함.

- 한편, 「지방재정법」 제34조¹⁾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²⁾ 및 지방자치단체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³⁾에서 벗어나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는 **특정자금**이라 할 것임.
- **장학기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예산을 출연·보조함으로써 중·고·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의 장학금 관련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중위소득⁷⁾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 중위소득\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중 ‘주민’은 ‘학생’으로, ‘운용 및 관리’는 관련 법령에서도 <사례>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 및 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2조(기금의 설치)에서는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⁹⁾에서는 기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있는 바 기금으로 설치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3조(기금의 조성)제3호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제명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2024. 1. 30.

6) 미래세대 교육비: 중위소득 120%이하 초등 20명(10만원/월), 중고등 43명(15만원/월) 1년간 지원
 7)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2024. 7. 31. 시행되었는 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기부금을 적시하고 있으나 ‘기부금품법’ 제5조¹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접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제3호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간인의 기부금을 기금의 재원 중 하나로 열거하거나 기금의 재원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기부금품법’ 제5조에 위배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의 기부를 강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짐. 다만,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조례안 제3조제3호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기부금’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한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것은 기부행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바, 기부금품의 모집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품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은 입법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기부금 중 지정기탁을 통하여 기부자가 자율적으로 자선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장학기금으로 조성되거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기부금은 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학기금의 재원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의 조 제목을 ‘(기금의 운용관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 및 제3항에서 관리·운용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 제목을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1항 중 ‘강남구금고의’ 보다는 ‘강남구금고에’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제4항제1호에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 구의원도 포함됨으로 강남구위원을 추천하는 의도라면 <사례>11)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임. 제6항의 위원 해촉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되

11)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기획경제국장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의원 2명

어 삭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의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삭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사례>¹²⁾와 같이 안내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¹³⁾의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¹⁴⁾에서는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는 장학기금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나 **장학생 선발 기능까지 부여하려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본래의 기능**

12)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 다소 성격을 달리 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모두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려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중 하나는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사례>¹⁵⁾와 같이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누락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부합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여짐.

- 안 제9조(회의)제4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¹⁶⁾의 규정을 간략하게 재기재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회의수당)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조례」 제14조¹⁷⁾에 근거가 있는 바 삭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장학금의 종류)에서는 장학금의 종류를 명시한 것이고
- 안 제12조(장학생의 자격)제1항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제1호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이 포괄적·피상적 조문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규정으로 보기에

15)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국장·소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
2.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비대면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미흡하다고 보이는 바 장학생의 자격 및 추천, 지급방법,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규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예시>¹⁸⁾와 같이 권장하고 있음. 아울러 제1항제1호의 일반 장학생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가구는 1천만원(4인가구 기준)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바 대상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180%’가 아니라 ‘180퍼센트’가 옳은 표기임. 제2항에서는 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장학금 지급(국가장학금 제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¹⁹⁾와 같은 우리 구 다른 장학금에서는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 중복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바 대학생인 경우 등록금이 비싸 중복지급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즉 등록금 범위안에서 타 기관 장학금에 우리 구 장학금을 더하여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급에 되더라도 학업에 도움을 주려는 장학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여짐. 따라서 우리 구 장학금 상호 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13조(장학생의 선발)의 장학생선발 방식은 공개모집, 학교추천,

18) <예시> 장학금 종류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 ① 성적우수 장학생 : 성적 80% + 생활수준 10% + 봉사 10%
- ② 가사 장학생 : 성적 20% + 생활수준 70% + 봉사 10%
- ③ 특기 장학생 : 수상성적 80% + 생활 10% + 봉사 10%

19)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장학금) ③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생이 납부하여야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장학금) ②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총액은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동장 등의 추천방식이 있으나 공개모집 방식을 제외하고 학교장, 동장 등의 추천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제외한 추천방식만을 선발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2호 중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 보다는 제11조제4호에 따라 ‘지역인재장학생’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4조(선발의 취소 등)제3호의 규정은 이미 다른 조례에서 중복 선발을 용인하고 있는 바 단지 중복하여 장학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선발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제4호에서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가 정지 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장학금 지급의 취소 또는 회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장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져 <사례>²⁰⁾와 같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1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²¹⁾의 규정을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제2항에서는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사례>²²⁾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동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6.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22) <사례>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생략)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팀장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²³⁾의 규정을 재기재하고 있는 바 삭제하더라도 무방해 보임. 다만, 재기재 한다면 기금운용계획서가 아닌 기금운용계획안 임.
- **안 제17조(존속기한)**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²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8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준용)**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학기금의 특성상 <장학금 및 학자금: 301-04> 예산과목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고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2조²⁵⁾의 규정에 지방보조금에 기금이 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② 기금운용관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어르신복지과** 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기금운용관은 **생활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되어 있는 바 해당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인재육성의 디딤돌로 삼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부여하려는 바 현재 우리 구의 기금은 총 15종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적지 않고 기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서도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장학기금이 선심성 기부행위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 |
|--------|
| 관련의안번호 |
| 391 |

제안연월일: 2024. 9. 5.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일부 미흡한 용어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문은 수정 또는 삭제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용어 등 미흡한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제4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수정(안 제5조 및 제8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규정 삭제(안 제6조 및 안 제10조)

라.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생의 자격, 선발, 지급 관련 조문 정비(안 제11조~제14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 준용 규정 삭제(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주민”을 “학생”으로, “운용 및 관리”를 “관리 및 운용”으로 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남구금고의”를 “강남구금고에”로 한다.

안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을 “강남구의회 소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안 제6조(중전의 제7조) 제2항 후단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제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안 제8조(중전의 제9조)제4항 중 “회의록을 작성·비치”를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으로 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안 제9조(중전의 제11조)제4호 중 “지역인재 장학금”을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금”으로 한다.

안 제10조(중전의 제12조) 제1항제1호 중 “180%”를 “18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인재 장학생”을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으로 한다.

안 제12조(중전의 제14조)제4호 중 “신청이 있을 때”를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안 제16조를 삭제한다.

안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18조를 삭제한다.

안 제19조를 제1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u>주민</u>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 <u>이용 및 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 (생 략)</p> <p>3. 「<u>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p> <p>4. (생 략)</p> <p>제4조(<u>기금의 운용관리</u>)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u>강남구 금고</u>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p> | <p>제1조(목적) ----- ----- <u>학</u> <u>생</u> ----- ----- ----- ----- <u>관리 및 운용</u>----- ----- --.</p> <p>제3조(기금의 조성) ----- -----.</p> <p>1. 2. (원안과 같음)</p> <p>3. 「<u>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2조----- -----</p> <p>4. (원안과 같음)</p> <p>제4조(<u>기금의 관리·운용</u>) ① ----- ----- <u>강남구 금고</u> <u>에</u> -----</p> |

리·운용한다.

②·③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략)

<신설>

3. 4. (생략)

⑤ (생략)

⑥ 구청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

②·③ (원안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위원은 -----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강남구의회 소속

2. (원안과 같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5 (원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⑤ (원안과 같음)

<삭제>

③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제9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수당) 구청장은 위원

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지역인재 장학금
5. (생략)

③ (원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1. 2. (원안과 같음)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5. (원안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8조(회의) ① ~ ③ (원안과 같음)

음)

④ -----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삭제>

제9조(장학금의 종류) -----

-----.

1. ~ 3. (원안과 같음)

4.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금

5. (원안과 같음)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

은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 강남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
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학생
2. · 3. (생략)
4. 지역인재 장학생은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학
생

② (생략)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생략)

제14조(선발의 취소 등)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

제10조(장학생의 자격) ① (원안

과 같음)

1. -----

----- 180퍼센트 -----

2. · 3. (원안과 같음)
4.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

② (원안과 같음)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원안 제1

1조와 같음)

제12조(선발의 취소 등) -----

다.

1. ~ 3. (생략)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
지 신청이 있을 때

제1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생략)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
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
다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17조(존속기한) (생략)

제18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
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1. ~ 3. (원안과 같음)

4. -----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
유가 있는 때

제13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원안 제15조와 같음)

<삭 제>

<삭 제>

제14조(존속기한) (원안 제17조와
같음)

<삭 제>

제19조(시행규칙)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원안 제1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강남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
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학교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

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

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

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제10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중위 소득 180퍼센트 이하의 가구 학생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 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특기 장학생은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등 특정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4.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지역사회 봉사과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을 제외한다)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대학총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2. 일반 장학생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거주지 동장 또는 부서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제12조(선발의 취소 등)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강남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이 제11호 각 호에 따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은 제외한다)을 받은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91 |
|----------|-----|

제출연월일 : 2024. 8. 23.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교육지원과

1. 제안이유

강남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 중 다양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목적 (안 제1조)

나. 장학기금의 설치·구성·관리규정 (안 제2조~제4조)

다.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안 제5조~제10조)

라.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추천·선발·지급 (안 제11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조례안 :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9. ~ 2024. 8. 8.) 결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자 변경(위원장→구청장)
- 장학생 자격·선발 방법 수정

| 입법예고 조례(안) | 반영결과 |
|---|--|
|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3. <u>장학기금 출연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⑥ <u>위원장은</u>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 <p>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④ ----- ----- ----- ----- -----</p> <p>3. <u>장학사업</u>----- -----</p> <p>⑥ <u>구청장</u>----- ----- ----- ----- -----</p> |
| <p>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p> | <p>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 ----- -----</p> |

| | |
|--|--|
| <p>두고 있는 <u>학생으로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 <p>-----<u>사람으로서</u>----- ----- -----.</p> |
| <p>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p> <p>2. 일반 장학생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거주지 동장 또는 부서장이 <u>관련 사회단체</u>장과 협의하여 <u>구청장</u>에게 추천</p> | <p>제13조(장학생의 선발) ----- ----- -----.</p> <p>2. ----- ----- ----- <u>구청장</u>----- --</p>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강남구 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내 학교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 장학금
3. 특기 장학금
4. 지역인재 장학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의 가구 학생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 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3. 특기 장학생은 예술·체육·기능, 인문·수리·과학 등 특정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4. 지역인재 장학생은 지역사회 봉사과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을 제외한다)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대학총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2. 일반 장학생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거주지 동장 또는 부서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제14조(선발의 취소 등)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강남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3. 장학생이 제11호 각 호에 따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은 제외한다)을 받은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제1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장학금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10억씩 구 출연금을 통해 5차연도까지 총 50억 장학
기금 재원을 조성하고, 1차연도는 기본재원의 일부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2차연도부터 이자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장학사업 지속 추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연도 (2025년) | 2차연도 (2026년) | 3차연도 (2027년) | 4차연도 (2028년) | 5차연도 (2029년) | 합계 |
|-------------|----------|-----------------|-----------------|-----------------|-----------------|-----------------|-----------|
| 수입 | ○이자수입 | 0 | 40,000 | 80,000 | 120,000 | 160,000 | 400,000 |
| | ○전 입 금 | 1,04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5,040,000 |
| | 소계(a) | 1,040,000 | 1,040,000 | 1,080,000 | 1,120,000 | 1,160,000 | 5,440,000 |
| 지출 | ○장학금지원 | 40,000 | 40,000 | 80,000 | 120,000 | 160,000 | 440,000 |
| | ○예치금(기금)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5,000,000 |
| | 소계(b) | 1,040,000 | 1,040,000 | 1,080,000 | 1,120,000 | 1,160,000 | 5,440,000 |
| □ 총 비용(a-b) | | 0 | 0 | 0 | 0 | 0 | 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연도 | | 1차연도 (2025년) | 2차연도 (2026년) | 3차연도 (2027년) | 4차연도 (2028년) | 5차연도 (2029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구비 | 지방세수입 | 1,04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5,040,000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 | | | | |

- 그 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기부금 등

5. 작성자 : 교육지원과 행정7급 박효성(02-3423-5276)

II. 비용추계 내역

○ 수입 : 구비(일반회계 전입금) + 이자수입금(4%기준)

○ 지출 : 장학금지원(50명 내외,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름)